

# 교직원명예퇴직수당지급에관한규정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본교 교원인사규정 제30조의2와 직원인사규정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거한 교직원의 명예퇴직수당(이하 “수당”이라 한다)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지급대상)** ①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본교 전임교원 또는 학교법인 및 본교 일반직원(일반직·기술직·기능직)으로 20년이상 근속한 자로서 정년퇴직일전 1년이상의 기간중 자진하여 퇴직하는 자로 한다. 다만, 퇴직예정일은 매학기말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의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.

② 총장은 교직원 수급계획 및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지급대상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.

**제3조(수당)** ① 수당의 지급액은 별표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.

② 여기서 퇴직당시 월통상급여액이라 함은 퇴직당시 호봉표상 기본급여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, 전임교원의 경우 본봉, 연구비 및 보직수당의 합산액을, 직원의 경우 본봉, 보직수당, 직급수당 및 직책수당의 합산액에 50%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. 다만 기타 연구비 및 기타 제수당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.

**제4조(공지)** 총무처장은 기획조정처장과 협의하여 매학기 수당지급대상 및 인원·수당지급신청기간·수당 지급방법·지급일 기타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늦어도 수당지급신청기간 개시일 20일전까지 전교직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.

**제5조(지급신청)**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기간내에 수당지급신청서에 명예 퇴직원을 첨부하여 교원은 교무처장에게, 직원은 총무처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6조(지급의 심사·결정)** ① 총무처장과 교무처장은 제5조의 신청서 접수마감일로부터 30일이내에 명예퇴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당지급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. 다만, 명예퇴직심사위원회는 교원의 경우에는 교원인사위원회가, 직원의 경우에는 직원인사위원회가 각각 이를 대신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·선정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.

1. 공상으로 폐질상태에 이른 교직원
2. 장기근속 교직원
3. 상위직 교직원

③ 제2항의 폐질상태라 함은 정상적인 근무를 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며,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과 종합병원장이 발급하는 진단서(소견서)를 참고하여 이를 판정한다.

④ 총무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직원 수당지급대상자 선정결과를 종합하여 이를 총장에게 추천하고, 총장이 최종적으로 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 결정한다.

⑤ 신청자가 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수당지급대상자 심사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.

**제7조(결정통지)** 수당지급대상자가 결정된 때에는 총무처장은 그 결과를 결정일로부터 15일이내에 소속부서장과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**제8조(수당지급시기)** 수당은 퇴직과 동시에 지급하며,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한다.

**제9조(사무관장)** 명예퇴직에 관한 사무는 총무처(총괄지원팀)에서 관장한다.

## 부 칙

이 규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이 규정은 1999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(별표)

명예퇴직수당지급액산정표

정년잔여기간별 대상자	산 정 기 준
1. 1년이상 5년이내인 자	퇴직 당시 월통상급여액의 60%×정년잔여월수
2. 5년이상	퇴직 당시 월통상급여액의 60%×60개월